PART 2

기업애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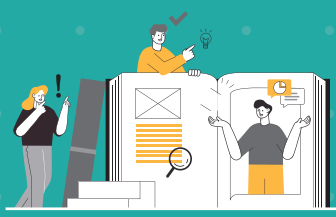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2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31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34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36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38

〈추진부서〉 경기도 수원시 법무담당관(031-228-2740)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

• 개선배경

○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는 여전히 낮음

○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민, 기업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는 해결되지 않는 실정

▶ 현장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 개선내용

① 전국 최초! 수원일반산업단지 지정·관리권 통합

개 선 전	개 선 후
- 지정·관리권자 이원화 1블록 경기도지사 2블록 경기도지사 3블록 수원시장	- 지정·관리권자 통합 1.2.3블록 수원시장
- 1·2블록 경기도 승인절차 기업민원처리 : 97일	- 기업 민원처리기간 : 4일 *기업민원처리 93일 단축

○ 2017년 5월 수원산업단지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시 건의 → 2018년 산업집적법 개정추진(실패)
→ 2019년 1월·2월 산업단지 지정권·관리권 통합 가능 여부 질의(가능회신) → 2019년 5월 경기도와 협의 추진 → 2019년 10월 수원산업단지 ①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관리 기본 계획(변경) 고시로 지정권·관리권 통합완료

② 벤처기업 유효기간 확대

개 선 전	개 선 후
- 2년	- 3년 유효기간 1년 연장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 절감

* 벤처기업확인제도?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

○ 2017년 4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대표와의 현장 토론회 시 건의 → 2017년 7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관련 규정 개정사항 수시 확인 및 요구 →2020년 5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완료

③ 드론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제외 - 1인 및 소규모 기업 대표자는 연구, 생산 활동을 함께 해 소규모 기업 상황을 반영 못함	- 드론비행자격자 생산인력 요건 대표자 포함 - 자격증 소지한 직원 채용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애로 해소

○ 2019년 2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3월 경기도, 국무조정실에 건의 → 2019년 7월 중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20년 3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확인 기준 고시

④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개 선 전	개 선 후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30㎡이하	- 기업부설연구소 칸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구공간 50㎡이하

○ 2019년 4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시 건의 → 2019년 4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9년 10월 과기부 검토결과 회신(수용) → 2019년 12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⑤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 운영 가능

개선 전	개선 후
- 해당 공장 노동자만 가능 - 구내식당이 없는 인근 공장 근로자들 식사환경 열악, 원거리 음식 의존	- 둘 이상 공동식당 운영가능 - 식당이용 불편 장기민원 해결

○ 2017년 5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건의 → 2017년 5월 중기부 옴부즈만에 건의 → 2017년 11월 중기부 검토결과 회신(장기검토) → 2020년 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 개선효과

○ 벤처기업, 드론, 부설연구소 등 기술혁신분야 규제애로 해소

○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업 부담 경감 및 미래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에 기여

경인일보

2020년 06월 17일 (수)
수도권 10면

벤처 속박하는 '불합리 규정' 제거… 혁신성장 디딤돌로 '전화위복'

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 주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수원시 법무담당관
박 명 희
(031-228-2739)

내실 있고 체계적 협력으로 규제애로 적극 해결하다

염태영 시장님 역점시책인 수원시 규제합리화 적극행정은 시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2014~2018 26회)와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2018~2019 83회)를 2014년부터 109회 운영하여 개선규제 229건을 관련부서, 중앙부처에 건의 협력하여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는 5년간 규제개혁 발자취 규제개선 우수사례 70건을 담은 성과사례집을 발간하여 성과 공유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다

기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성장 지원과 벤처기업, 드론, 부설연구소 등 기술혁신분야 규제애로 해소로 기업 투자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산업분야 혁신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14회를 운영하여 6건 규제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상상이 현실로 꿈꾸는 적극행정 다짐하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일생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현장과 밀접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과 기업이 건의한 애로사항이 개선·해결될 때마다 공직생활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고 규제혁신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규제개혁 꿈꾸며 적극행정을 위하여 끝임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는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상의 기쁨! 모두와 함께 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부서〉 경기도 오산시 지역경제과(031-8036-756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기업 살리기
〈LH관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 인하 추진〉

• 개선배경

○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내수 및 수출이 막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위기극복을 위해 무급휴직 등 일자리 불안까지 확산됨

○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기업의 경우 관련규정*이 미비하여 임대료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관련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일반기준

▶ 임대기업의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필요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 임대료 인하 예외요건 – ① 산업침체, ② 고용여건 악화, ③ 재난 등이 발생하여 특별지역으로 지정선포 – 특별지역 지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관리기간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

○ 가장2산업단지 임대기업(21개 기업) 임대료 인하

• 추진과정

○ 2020.03.23. : 산업단지 임대기업 임대료 인하 건의(오산시 ⇒ 경기도 산업정책과)

○ 2020.08.11.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국토교통부)

• 개선효과

○ 인하율 및 기간 : 6개월간 25% 인하('20.7.1.부터 적용)

○ 경기도내 3개지구 31필지 임대료 인하 : 31필지, 573백만원 인하(오산시 27필지, 448백만원)

붙임 1) 관련법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 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개 선 전	개 선 후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년도 또는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인하하는 임대료는 조성원가(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	1.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지정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한함)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다.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라. 그 외 산업 침체, 고용여건 악화, 재난 등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특별지역 등으로 지정·선포한 경우
2. 임차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	2. 임차기업이 해외유턴기업 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임대차 계약 이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의 임대료에 한함)

개 선 전	개 선 후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또는 영 제47조의7제2항에 의한 임대관리기관이 임대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포함하는 경우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처분을 위임·위탁받은 자와, 공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줄간격 인쇄하기 취소

LH 임대산단' 임대료 6개월 인하...경기도 건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7.02 10:08 수정 : 2020.07.02 14:2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6월26일 이사회를 열어 관리하는 임대산단을 대상으로 7월1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6개월간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월 수출기업 30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경기도는 수출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월30일 국토교통부와 LH 측에 임대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건의에 적극 공감하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극복이나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 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규모는 5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침에 따르면, LH 임대산단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로,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도록 돼있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 등도 공공기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추진부서〉 경기도 의왕시 교통행정과(031-345-3313)

장기 미사용 부지, 기업 주차난을 해소하다!
〈의왕시-LH협업,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한 해결〉

• 개선배경

○ 의왕포일인텔리전트 입주기업들의 주차공간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 발생과 주차난으로 IT개발 인력 등 기업의 고급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 2012년 택지개발 준공 이후 학교용지가 미매각 부지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토지활용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오랫동안 방치된 학교용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건의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목적(학교용지) 외 사용 불가 -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용도 변경 불가	- 유연한 법 적용(공익을 위한 목적사용)으로 용도 변경 없이 임시주차장 조성 및 기업 주차난 해소

• 추진과정

○ LH공사(학교용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협의: 2019. 5~7월

○ 기업체의 주차장 이용 등 의견 수렴: 2019. 7. 11.~7. 22.

○ LH공사(학교용지) 부지 무상사용 MOU 체결: 2019. 11. 6.

※ 의왕시: 공용주차장 사용(6,500㎡) 등, LH공사: 재산세 감면 등

○ 주차장 조성 반대 다수민원 접수(35건)로 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설명 설득: 2019. 11월

※ 출입구 변경, 안전관리,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주민편의시설 요구 등

○ 주차장 조성 공사(5,500㎡, 136면): 2019. 11. 8.~2020. 1. 30.

○ 주차장 운영 개시(136대): 2020. 3. 16.

• 개선 효과

○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일부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장기 방치된 유휴지의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권 조성

○ 토지의 무상사용으로 기업민원 조기 해소 및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 언론 보도

수도권일보

2019년 11월 07일 (목)
수도권 07면

의왕시-LH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

포일2지구 주차난 해소 기대

부지면적 5,500㎡, 120면 규모

경기신문

2019년 11월 07일 (목)
수도권 09면

김상돈 의왕시장이 포일2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일 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의왕시 제공

의왕 포일2지구 만성 주차난 다소 해소 기대

시-LH, 학교용지 주차장 활용

의왕관내에서 NH농협 전산센터 등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주차난을 겪어오고 있는 포일2지구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학교용지 공영주차장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의왕포일2지구 내 LH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무상 임대해 2020년 9월 30일까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지면적 5천500㎡(1천663평)에 약 120면 규모의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으며, LH는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포일동 지역은 그동안 주차수요가 높았던 곳으로써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인접 주민과 업무시설 종사자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오는 12월 공사완료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양측에서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장용모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포일동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및 사업비 확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 기관 협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 관련 사진

〈정비 이전〉

〈주차장 정비 후〉

〈추진부서〉 경기도 광주시 기업지원과(031-760-4805)

강판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 개선배경

○ 광주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권역으로 중첩 규제되어 건물 증축 어려움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부족한 공간 활용

○ 조례 허용 가설건축물 재질 : 천막·유리·플라스틱(풍수해 및 화재에 취약)

▶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제한적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천막, 유리, 플라스틱)	- 강판재질의 창고를 확보함으로써 주요 자재 등을 별도의 증축 없이 화재 및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 추진과정

○ 2016년 조례 개정 추진(2회) → 2017년 국토부 관원회신 결과 추진 불가

○ 건축조례에 신규 조항 추가 추진 → 2020년 3월 건축 조례 개정 완료

-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국토부 관원 질의(2회), 건축과-기업지원과 부서간 실무협의

〈가설건축물(천막)〉

가설건축물(칼라강판)

• 개선효과

○ (경제) 불필요한 가설건축물 재설치 비용(6천여개 기업 2,970억원) 절감

기준(330㎡×10m)	금액(천원)	내구연한(년)	사용후처리	화 재	태풍, 대설
천막	26,500	4	산업폐기물	취 약	붕괴,누수우려
칼라강판	30,000	12	고 철	안 전	천막보다 안전

〈가설건축물 재질 비교표〉

○ (환경) 가설건축물 교체 시 발생하는 폐 천막 등 산업폐기물 처리 최소화, 환경개선

• 개정조례 광주시 건축조례 제25조

<table>
<tr><th>제25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th><th>제25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th></tr>
<tr><td>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

2. 공장(제조업소 포함), 창고에 설치(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것 포함)하는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써 경량철골조(파이프조에 한정한다)로 지지하는 창고용도에 쓰이는 구조물

3. 내지 6. - 생 략 -</td><td>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table>
<tr><th colspan="3">가설건축물</th><th>기타</th></tr>
<tr><th>용도</th><th>구조 및 재질</th><th>규모</th><th></th></tr>
<tr><td>창고용 건축물 (1)</td><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단열재가 없는 강판</td><td>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이하</td><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
· 기존 건축물과 1.5미터 이격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
·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까지 건축된 경우 면적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표지판 설치</td></tr>
<tr><td>창고용 건축물 (2)</td><td>· 경량철골조 (파이프로 한정)
·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td><td>제한없음</td><td>· 공장 및 제2종근생(제조업소), 창고 부지안에 설치하는 것
· 지상 1층으로 한정(옥상 설치 불가)</td></tr>
</table></td></tr>
</table>

〈추진부서〉 경기도 안양시 정책기획과(031-8045-2211)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 허용〉

• 개선배경

○ 코로나 등 의료폐기물 폭증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포화(처리능력 한계 봉착)

- 국내 소각시설 단 13개, 대부분이 노후시설이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서울, 전북, 강원, 제주 소각시설 없음)
- 소각시설 증설 및 확장은 님비현상으로 지난
-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멸균이 가장 안전, 그러나 대부분 수백킬로 이동하는 현실. 처리단가 상승 등으로 병원 내 장기방치, 불법폐기, 운송 중 보관불량·차량사고 등으로 2차 감염 위험 확산

※ 국내 멸균분쇄시설 : 분당 서울대병원에 1곳 유일 (규모 (W)20m×(D)6m×(H)5.5m,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임시허가 및 법령 개정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추진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m 범위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 이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 엄격 금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 · 보관 · 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9. 22. 시행 2020. 9. 25.〉**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따른 멸균분쇄 시설

○ 규제 개선 추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 멸균 · 분쇄시설 허용 건의 개선완료
- '19.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교육부 개정수용
- '20. 9.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신설

※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세부기준 완화 건의 : 병행 추진 중
[현행] 멸균 "방법" ⇒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멸균성취도 "결과"
⇒ 다양한 형태의 중소형 멸균분쇄시설 개발/판매 가능
- '20. 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신청 지원
- '20. 3. 행정안전부 건의
- '20. 5. 환경부 중장기 검토의견
- '20. 6. 시군순회간담회 통해 국무조정실 재건의
- '20. 7. 중소기업옴부즈만 재건의
- '20. 10.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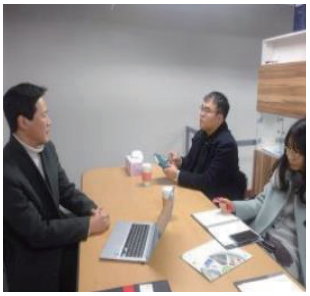

'19. 12. 기업현장 방문
규제샌드박스 지원 및 과제 초안 작성(행안부 건의)

'20. 6. 시군순회간담회
과제 보완, 국조실 · 중기부 재건의

• 기대효과

○ 현행 의료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포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
○ 병원 내 및 지역사회에 대한 2차 감염 예방
○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절감(톤당 백만원 이상)을 통한 의료 수가 합리화
○ 다양한 멸균분쇄장비 개발(신산업)을 통한 거대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 2018년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장 규모(2019년 11월 26일, GLOBE NEWSWIR)
세계시장 1,177억 달러(135조원) / 국내시장 2,000억원

• 언론보도

○ '천막 아닌 야영시설도 설치 가능'...경기도 규제개선 통해 소상공인 고충해소
(2020. 9. 23. 중소기업뉴스, 한국경제, 아주경제, 경인방송 등)

> 이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의료기관 멸균.분쇄시설 허용 ▲자연재해대책법 상 재해영향평가 대상 구체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명확화 ▲카페인 제거한 홍차에 'decaffeinated(탈 카페인 제품)'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 신설 등이 개선된다.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허용, 탈카페인 기재 허용, 센서형 조광제어 신호등 규격신설은 안양시 추진하여 개선한 과제임.

○ 병원계 골칫거리 '의료폐기물' 해소되나… 멸균분쇄기 허용
학교구역 근방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
멸균분쇄시설 설치 재허용… 병·의원 의료폐기물 숨통
(2020. 9. 25. 메디컬타임즈, 보건뉴스, 메디컬투데이, 메디파나뉴스 등 다수)